

ABS 핵심용어 알아보기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 생물다양성이란 육상·해양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 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합니다.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 생물자원이란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생물체·또는 그 부분·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유전물질과 유전자원

유전물질이란 기능적 유전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유전자원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을 말합니다.

전통지식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지속해 온 토착·지역사회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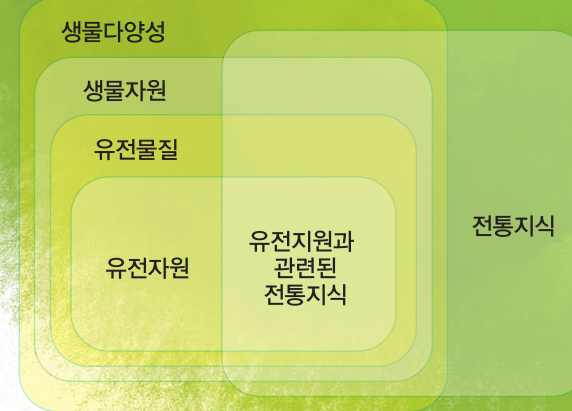
사전통보승인(PIC)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접근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합의조건(MAT)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가 상호간 합의한 조건, 물질이 이전되는 경우 보통 물질이전계약(MTA)을 체결합니다.

CBD 주요 용어 사이의 관계



ABS 국제협상 동향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생물유전자원을 포함한 생물자원에 대한 각 나라의 주권적 권리 인정

2002년 '본(Bonn) 가이드라인' 채택

ABS의 적용범위 및 이행절차 등에 대한 자발적인 국제지침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ABS 국제레짐 협상 개시

2006년 제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2010년까지 ABS 협상을 종결지를 것을 결의

2008년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2010년까지의 협상 일정 확정(본 로드맵)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ABS 국제레짐 채택 예정

생물자원 이용, 국제 규범을 논하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우리 삶 속의 생물다양성

하늘, 넉넉한 바다, 숨쉬는 생명,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물다양성의 모습입니다. 단지 동물, 식물만이 생물다양성의 전부가 아닙니다.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 그리고 이들을 구성하는 유전자의 다양성도 모두 생물다양성입니다.

생물다양성?

생태계 Ecosystem + 종 Species + 유전자 Gene

우리 삶을 지탱하고,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또 화장품 · 원예 · 건강식품과 같은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해 주는 고마운 생물 다양성입니다. 이러한 생물다양성이 사라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공동 노력하기 위해 전 세계의 나라들이 모여 1992년에 채택한 것이 바로 생물다양성협약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다음 세 가지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1. 생물다양성의 보존
2.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으로부터 ABS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함께 지켜가는 ABS

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에게는 오랜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자원을 가져가서 이용하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공유하지 않는 걸까'라고 말이지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생물자원에 대한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정한 이익공유를 규정한 ABS 제도에 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생물자원의 연구 · 개발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할 확률이 아주 작은데, 이제는 이용절차가 국가별로 다르거나 과중한 이익을 요구받게 되다보니,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연구 · 개발조차 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국제규범 협상입니다. 자원제공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공유 받을 수 있고, 자원이용국의 입장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확실한 절차에 따라 연구 · 개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win-win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ABS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의 화이자제약과 영국의 유니레버는 후디아(Hoodia)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식욕억제 성분으로 다이어트 제품을 개발 · 판매해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 후디아(Hoodia)라는 식물은 여행 중 허기를 달래던 식물이라는 San족 전통지식임을 알게 된 환경단체가, San족에게 이익을 공평하게 배분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여 결국 화이자와 유니레버는 제품생산을 중단했고, 유니레버는 이익 배분을 약속했습니다.

1 ABS 적용 여부 확인

- ▶ 연구 계획 수립
- ▶ ABS 적용 범위 확인
- ▶ 해당 국가 국내법/관련기관 확인



2 사전통보승인(PIC)

- ▶ 유전자원의 소유권자/승인권자 확인
- ▶ 접근 및 이용의 목적 및 예상 결과
- ▶ 탐사활동 및 이용의 기간



3 상호합의조건(MAT)

- ▶ 접근 · 이용할 유전자원의 종류 및 수량
- ▶ 구체적인 이익공유의 종류 및 방법
- ▶ 필요시 물질이전계약(MTA) 체결



4 이익공유

〈 금전적 〉

- ▶ 로열티
- ▶ 연구자금
- ▶ 공동펀드 등



〈 비금전적 〉

- ▶ 연구참여 및 공유
- ▶ 기술이전 및 훈련
- ▶ 특허권 공동소유 등



5 이용 및 의무준수

- ▶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및 의무준수
- ▶ 제3자 이전, 이용목적 변경 필요시
- ▶ 검증, 보고 및 분쟁해결

